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2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46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

□ 개정이유

-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7 ‘징계양정기준’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간통 항목을 삭제하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
- 음주운전의 기준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개정
- 공사 징계양정기준은 징계의 범위가 없어 과도한 징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참조하여 징계양정기준 내에 징계범위를 설정

□ 주요골자

- 징계양정기준 ‘간통’ 항목 삭제
- 징계양정기준에 불법촬영 항목 추가
- 징계범위 설정

- 개정규정안 : 별첨**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**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**
-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**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(징계양정기준)

징계양정기준 ‘별표 7’ 및 ‘별표 8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의 성 관련 범죄행위에서 간통을 삭제하고 불법촬영을 추가
- 비고의 음주운전의 정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.05%에서 0.03%로 변경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
1. 성실의무 위반							
가. 공금 등 횡령	○						
나. 공금 등 유용 및 업무상 배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다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라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마.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. 성실의무 위반							
가. 공금 등 횡령							○
나. 공금 등 유용 및 업무상 배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	○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	○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	○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다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	○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라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	○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마.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	○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
정 계 양 정 기 준(현행)

정 계 사 유	정 계 기 준						비 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전책 이상	
2. 복종의무 위반							
가. 지시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고의 · 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나.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					○	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가. 음주운전							
1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1회						○	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(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정계)
2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2회					○		
3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3회				○			
4) 면허취소(0.08% 이상) 1회					○		
5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					○		
6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				○			
7) 면허취소(0.08% 이상) 2회				○			
8) 면허취소(0.08% 이상) 3회	○						
9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					○		
10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인적피해 발생				○			
	물적피해 발생				○		
11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인적피해 발생	○				○		
	물적피해 발생						
12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4회						○	
13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5회					○		
14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6회				○			
15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					○		
16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	○						
17) 운전직의 운전면허 취소	○						

징계 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 사유	징계 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2. 복종의무 위반							
가. 지시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	○					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가. 음주운전							
1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1회	○						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(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)
2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2회		○					
3) 면허정지(0.03%~0.08% 미만) 3회			○				
4) 면허취소(0.08% 이상) 1회		○					
5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		○					
6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			○				
7) 면허취소(0.08% 이상) 2회			○				
8) 면허취소(0.08% 이상) 3회					○		
9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		○					
10)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적피해 발생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물적피해 발생			○	○			
11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물적피해 발생					○		
12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4회	○						
13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5회		○					
14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 이상 6회			○				
15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				○			
16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					○		
17) 운전직의 운전면허 취소					○		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전책 이상	
나. 교통사고							
1) 교통사고 인명피해 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)	피해자가 경상일 때					○	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
	피해자가 중상일 때				○		
2)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	인적피해 발생				○		○
	물적피해 발생					○	
3)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	인적피해 발생	○					○
	물적피해 발생			○			
다. 무면허 운전							
1)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				○			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
2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					○		
라.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							
1) 공무시간 중인 경우					○		○
2)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						○	
마. 성 관련 범죄행위							
1) 강간,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· 성폭력 등	○						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성 폭력, 강제추행		○					
3) 성매수				○			
4) 성희롱, 간통					○		
바. 상해 및 폭행, 협박 등					○		
사. 절도, 사기 등 형사범죄							
1) 절도, 사기, 공갈, 위증, 무고 등					○		○
2) 강도 등	○						
아. 도박 등 사행행위							
1) 상습적인 경우				○			○
2) 일시적인 경우						○	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나. 교통사고							
1) 교통사고 인명피해 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)	피해자가 경상일 때 피해자가 중상일 때	○ ○					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	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		○ ○				
3)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	인적피해 발생 물적피해 발생				○ ○		
다. 무면허 운전							
1)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			○				
2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		○					
라.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							
1) 공무시간 중인 경우		○					
2)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	○						
마. 성 관련 범죄행위							
1) 강간,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· 성폭력 등						○	
2) 성 폭력, 강제추행					○		
3) 성매수			○				
4) 성희롱, 불법촬영		○					
바. 상해 및 폭행, 협박 등							
사. 절도, 사기 등 형사범죄							
1) 절도, 사기, 공갈, 위증, 무고 등		○					
2) 강도 등						○	
아. 도박 등 사행행위							
1) 상습적인 경우			○				
2) 일시적인 경우	○						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장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
4. 비밀업무 위반							
가. 비밀누설 · 유출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다.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 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 · 열람 및 관리 소홀 등					○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마.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4. 비밀엄수의무 위반							
가. 비밀누설·유출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다.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 소홀 등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마.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경책 이상	
5. 친절·공정의무 위반							
가. 친절·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나. 공문서 관리							
1) 공문서 위조·변조	○						
2)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			○				
다. 소송수행 관련							
1)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					○		
6. 부작위 의무 위반							
가. 복무위반							
1) 무단결근 (월 3일 이상)			○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(월 3회 이상)					○		
3)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					○		
4)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(이석)				○			
5) 당숙직 중 음주(만취) 및 유기행위				○			
6)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				○			
7) 기타 복무관련 사항					○		
나. 행동강령 위반							
1)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					○		
2)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					○		
3)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					○		
4)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의 및 무허가 반출					○		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5. 친절·공정의무 위반							
가. 친절·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공문서 관리							
1) 공문서 위조·변조						○	
2)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			○				
다. 소송수행 관련							
1)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	○						
6. 부작위 의무 위반							
가. 복무위반			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무단결근 (월 3일 이상)			○				
2)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(월 3회 이상)	○						
3)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	○						
4)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(이석)		○					
5) 당숙직 중 음주(만취) 및 유기행위		○					
6)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	○						
7) 기타 복무관련 사항	○						
나. 행동강령 위반							
1)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	○						
2)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	○						
3)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	○						
4)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 및 무허가 반출		○					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경책 이상	
5)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					○		
6)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						○	
7)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					○		
8)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다.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						○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○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라.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○	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○		
7. 청렴의 의무 위반							
가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○	○	○			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○	○			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○						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○					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○					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○						
나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	○	○	○		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○	○	○		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○	○					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○					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○					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○						

고의·과실
또는
비위의
경중에
따라 가감

금품·향응요구,
정기·상습
수뢰·알선 시
: 해임이상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5)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		○					
6)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	○						
7)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		○					
8)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○						
다.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라.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○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7. 청렴의 의무 위반							
가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○	○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			○	○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					○	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					○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					○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					○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					○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					○	
나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	○	○	○		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		○	○	○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○		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					○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					○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					○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					○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					○	

고의·과실
또는
비위의
경중에
따라 가감

금품·향응요구,
정기·상습
수뢰·알선 시
: 해임이상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	
다.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· 향응수수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		○	○	○	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	○	○	○	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○	○	○				고의 · 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○	○				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○	○				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○					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○						
라. 절대성 성매수							
1) 절대성 성매수 1회		○					
2) 절대성 성매수 2회 이상	○						
8. 인사채용 비위							
1) 응시 · 자격 요건 미확인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과실 : 주의 · 경고 / 고의 · 중과실 : 경징계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	
2)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과실 : 주의 · 경고 고의 · 중과실 : 경징계, 증징계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	
3) 채용공고 후 응시 · 자격 요건 임의(변경 절차 미이행) 변경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징계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	
4) 채용절차 미준수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절차 미준수 : 경징계 주요절차 미준수 : 증징계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	
5)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	경과실 : 경징계			고의 · 중과실 : 증징계			
6)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							
7)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	경과실 : 증징계						
8)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							
9)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, 전환 대상자 선정 부적정	경과실 : 경징계			고의 · 중과실 : 증징계			
10)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성							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다.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·향응수수							
1) 100만원 미만(수동)		○	○	○			
2) 100만원 미만(능동)			○	○	○		
3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○	○	
4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능동)					○	○	
5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수동)					○	○	
6)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(능동)						○	
7) 500만원 이상(수동)						○	
8) 500만원 이상(능동)						○	
라. 접대성 성매수							
1) 접대성 성매수 1회					○		
2)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						○	
8. 인사채용 비위							
1) 응시·자격 요건 미확인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과실 : 주의·경고 / 고의·중과실 : 경징계	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
2)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과실 : 주의·경고 고의·중과실 : 경징계, 증징계	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
3) 채용공고 후 응시·자격 요건 임의(변경 절차 미이행) 변경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경징계	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
4) 채용절차 미준수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절차 미준수 : 경징계 주요절차 미준수 : 증징계		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증징계		
5)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	경과실 : 경징계				고의·중과실 : 증징계		
6)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	경과실 : 증징계						
7)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	경과실 : 경징계						
8)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	경과실 : 경징계				고의·중과실 : 증징계		
9)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, 전환 대상자 선정 부적정	경과실 : 경징계						
10)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성							

징계양정기준(현행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경책 이상	
9.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에 준하는 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○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	○		고의 · 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10. 기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○			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○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		○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				○	

- 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
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
징계양정기준(개정안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9.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에 준하는 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10. 기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- 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
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입 안 자	직 성 명	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황 기 성 (390-7606)